

— 구미시 친환경육성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9월 13일

나. 제 안 자 : 이강덕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05년 9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05년 9월 23일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구미시의회의의원 이 강 덕

나. 제안이유

- 우리시 농업의 환경안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함은 물론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사전예방과 농업환경정책 기조 전환으로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시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 및 FTA 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2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 지원사업(안 제3조)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
-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지원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대상(안 제4조)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 대상자 선정기준(안 제6조)

-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
-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서 등

○ 농업환경개선(안 제7조)

-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 정책을 추진
 - 농경지 개량
 - 농업용수 오염방지
 -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검정
 -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안 제8조)

-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
 -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운용
 -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 교육 및 훈련(안 제9조)

-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및 제11조)

-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기능(안 제12조)

-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의 평가 및 시상(안 제18조)

-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

라. 참고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시행령
-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황 창 수

- 본 조례안은 WTO 및 FTA 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 농업의 환경안정기능을 증대시킴은 물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인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